#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465

제안연월일: 2024. 11. .

제 안 자: 여성가족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68	한병도의원	2024.6.21.	○제418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 의(2024.9.4.)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 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03316	조은희의원	2024.8.28.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6.)
	2203318	전진숙의원	2024.8.28.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회부(2024.9.6.)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9.)에서 위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2024.9.23.)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 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

- 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다.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신 설).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 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 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 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합한"을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청구 등"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제17조의2의 제목 중 "교육"을 "학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제31조의 제목을 "(권한의 위임)"에서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 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과 홍보) (생 략)	과 홍보)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
	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
	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
	<u>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u>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
	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
	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실시한다.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	2
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u>서면</u> 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③ (생략)
-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생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 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1. ~ 4. (생 략)
  -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u>청</u>

<u>서면</u>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u> 포함한다. 이하 같다)</u>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u>.</u>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
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1. ~ 4. (현행과 같음)
5

<u>구 등</u>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신 설>

6. (생략)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u>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u>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丁,	室/	생온	<u> †인</u>	신 <sup>2</sup>	성 -	등 등	슬		
					_						
	5	의2 <u>.</u>	출	생호	탁인	신:	청을	<u>.</u>	위호	한	유
		<u>전</u> 기	아검	사	비용	- ス	] 원				
(	6.	(현	] 행 3	라 :	같음	-)					
제	17	'조	의2(	청스	산년	ক্	한부	모	에	대	한
	학	업	지	원)	1						
							다음	1	각	ই	의
	기	원-				·					

- ~ 4.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 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 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 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 용의 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 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생략)

<신 설>

② 여성가	<u> 족부장</u>	관이나	시 •	도
지사는 저	1항의	평가	결과	-에
따라 한부	모가족	복지시~	설의	거
주자를 다	른 한부	부모가족	수복지	시
설로 보내	는 경-	우에는	제24	조
제2항에 대	다른 입	소자 -	권익	보
호 조치를	하여이	· 한다.		

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국세강제 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 | -----.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 의 일부를 <u>정부가 설립·운영비</u> 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 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 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